간접증거에 의한 증명과정

권 영 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자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3폐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 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과학적인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해명하려고 한다면 추측과 억측이 생기고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정 확히 밝혀낼수 없다. 그러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는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 충분히 검토확 인된 증거들을 가지고 정확히 밝혀야 한다.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리용되는 증거는 학술적으로 볼 때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수 있지만 사건사실과의 증명관계의 견지에서 보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할수 있다.

직접증거는 다른 증거들의 도움이 없이 사건의 주요사실을 곧바로 증명할수 있는 증거이며 간접증거는 다른 증거들과의 련관속에서만 사건의 주요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이다.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주요사실은 범죄자(범죄혐의자, 피심자, 피소자 포함)에 의하여 범죄가 감행되였는가, 감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건의 주요사실을 단독으로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직접증거이며 그렇지 못한 증거는 간접증거로 된다. 결국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기준은 증거와 사건의 주요 사실과의 증명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직접증거는 대다수가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진술과 사건의 주요사실을 반영한 증거물, 증거문서들이다. 따라서 직접증거는 사건의 주요사실과의 증명관계가 직 선적이고 다른 증거가 없이도 사건의 주요사실에 대하여 판단할수 있게 한다. 직접증거가 사건의 주요사실과 맺고있는 밀접한 관계는 그것이 소송증명에서 최고의 증명가치를 가 지게 한다.

그러나 직접증거는 그자체의 부족점으로 하여 그것만으로써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건 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이처럼 직접증거는 그자체가 부족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직접증거에 완전히 혹은 지나치게 의거해서는 사건을 정확히 증명할수 없다.

직접증거의 이러한 부족점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는것만큼 간접증거가 소 송증명에서 노는 역할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증거리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송과정에서 간접증거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직접증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것이다. 직접증거는 대체로 언어적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언어적형식으로 표현되는 진술 자료들은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으로 하여 허위적인것도 있을수 있고 그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수 있는것만큼 반드시 다른 증거들로 그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토확인하지 않 으면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리용될수 없다. 그리므로 직접증거는 반드시 수집된 다 른 증거에 의하여 검토확인되여야 한다.

직접증거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확인은 수집된 다른 직접증거 혹은 간접증거에 의하여 진행될수 있다.

수집된 다른 직접증거에 의한 검토확인은 검토하려는 직접증거의 내용이 다른 직접 증거의 내용과 일치하다는것을 밝히는것이다.

그러나 직접증거의 정확성은 이미 수집된 다른 직접증거 하나만으로는 완전하게 검 토확인하는것이 어렵다. 그것은 두 직접증거들의 기본내용이 일치하다고 하여 차이나는 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직접증거의 대다수를 이루는 언어적증거들은 사건발생당시의 주객관적조건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실제사실과 맞지 않을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다른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검토확인되여야 한다.

사실상 많은 사건들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들로 이루어진 증거체계에 의하여 증명된다. 이 증거체계에서 간접증거는 주요하게 직접증거의 진실성과 믿음성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는 작용을 하며 직접증거가 담고있는 내용과 정보들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 직접증거의 변화를 막게 한다.

직접증거의 정확성에 대한 간접증거의 검토확인작용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발 혀되다.

우선 간접증거는 직접증거가 증명하는 일부 련관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검토확인을 할수 있다.

절대다수의 직접증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사건의 주요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있는외에 일부 련관사실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이것은 사건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런 련관사실들의 확실성과 믿음성을 확신하도록 할뿐아니라 직접증거가 증명하는 사건의 주요사실들도 이에 근거하여 확실하고 믿음직하다는것을 인정하도록 하여준다.

또한 사건담당자가 간접증거들을 리용하여 어떠한 《사건의 주요사실》을 추리해내고 그것을 직접증거를 통하여 얻어진 《사건의 주요사실》과의 대비검토를 진행하여 그 결과 가 일치되게 되면 간접증거는 추리를 통하여 사건의 주요사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직접 증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할수 있다.

간접증거들에 근거하여 추리를 진행하고 얻게 되는 《사건의 주요사실》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것만큼 여기에만 근거해서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수 없다. 그러나이렇게 얻어진 《사건의 주요사실》은 직접증거를 통하여 얻어진 《사건의 주요사실》과의대비분석을 진행하여 두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사건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실제한 사건의주요사실을 확신할수 있다.

이처럼 간접증거는 직접증거의 믿음성과 안정성을 높일수 있게 하고 사건사실에 대한 인정도 환경이나 진술자의 심리변화에 따라 변화되지 않도록 한다.

간접증거와 직접증거와의 관계를 보면 인적증거이든 실물증거이든 관계없이 모든 간접증거는 직접증거의 부분적인 내용만을 검토확인할수 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증명하는 개별적인 사실들은 개별적인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그 정확성이 확인되여야 한다.

간접증거로 직접증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둘 혹은 그 이상의 간접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들에는 반드시 완전히 같거나 류사한 정보가 담겨져있어야 한다.

대다수 사건들에서 직접증거를 수집하는것이 어려운 대신 간접증거는 발견하기가 보다 쉽다. 그러므로 실천에서는 간접증거에 의한 직접증거의 검토확인방법이 많이 리용된다.

소송과정에서 간접증거는 다음으로 그것이 직접증거와의 결합에 의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한다는것이다.

그 어떤 다른 증거로 안받침되지 않은 직접증거를 가지고 사건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하나의 직접증거만 있고 그 어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사건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특히 유죄를 인정하는 피소자의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소자의 행위를 인정할수 없다. 만일 직접증거만을 중시하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진술자가자기의 진술을 다시 뒤집는 경우 사건을 밝힐 가능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증거는 반드시 다른 증거 특히 간접증거들과 결합되여야 한다.

간접증거를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한다는 문제와 간접증거로 직접증 거를 검토확인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간접증거로 직접증거를 검토확인한다는것은 직접증거가 담고있는 개별적내용이 다른 간접증거에 의하여 내용상 동일하다는것을 밝히는것이라면 간접증거와 직접증거를 결합 하여 사건사실을 증명한다는것은 직접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다른 간접증거들이 보충적으로 증명하여 사건전반에 대한 증명작용을 한다는것이다.

사건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증거들사이에 호상 부합되고 호상 결합되는 등의 관계에 기초하여 전체 사건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한가 하는것을 판단하며 진실하지 않은 증거들은 배제하고 빠진 증거들은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사건사실을 증명한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호상결합에 의한 사건증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매개 간접증 거가 사실인가, 믿을만 한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것이다.

증거로서 자격을 갖춘것만이 증명작용을 할수 있으며 다른 증거들에 대한 검토확인 과 함께 보충적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므로 사건담당자들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개 증거의 수집원천과 내용, 형성과정, 사건사실과의 련관 등 다양한 측면들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한다. 그에 기초하여 증거의 객관성과 관련성, 합법성을 판단하고 증거의 본질 적속성에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은 배제하여야 한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호상결합에 의한 사건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직접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밝혀야 할 련관사실이 포함되지 않은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는것이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직접증거는 결코 모든 증명대상에 대해 증명해줄수 없으며 무조 건 증명해야 하는 련관사실의 내용에 대하여 만일 직접증거가 해당한 내용과 정보를 포 함하지 못하였다면 이때에는 간접증거에 의거하여 련관된 사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접증거가 증명할수 없는 사실들에 대한 간접증거의 보충적인 증명이다. 직접증거에 의한 사건해결에서 이러한 증명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와의 호상결합에 의한 사건증명에서는 직접증거가 놓친 련판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찾아내여 소송증명에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호상결합에 의한 사건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건해결에 서 관건적인 련관사실에 대하여서만 증명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건해결에서 관건적인 련관사실에 대하여서만 증명하여야 한다는것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정도의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건과 련관된 사실들가운데는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실들도 있을수 있다. 그런데 사건과 련관이 있다고 하여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밝힌 다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사건조사의 방향과 방도를 바로 설정할수 없고 쓸데 없는 로력과 시간의 랑비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므로 소송증명에서는 반드시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을 문제로 삼고 증명하여야 하며 사건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들을 증명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소송과정에서 간접증거는 다음으로 간접증거체계에 의하여 제기된 사건사실을 원만 히 증명할수 있다는것이다.

직접증거의 특성으로부터 직접증거 하나만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수 없다. 오늘날에 와서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이루어진 증거체계 또는 간접증거체계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있다.

직접증거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것에 비해볼 때 간접증거체계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간접증거체계에 의거하여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매개의 간접증거들이 확실하고 질이 보장되여야 할뿐아니라 량적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규모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간접증거체계를 통하여 추리를 여러번 진행하여야 사건의 주요사실을 판단할수 있다. 이 렇게 놓고볼 때 간접증거체계에 의거하여 사건을 증명하는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과정이 라고 볼수 있다.

간접증거체계에 의한 사건사실의 증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간접증거체계에 포함되는 모든 간접증거들이 철저히 검토확인되여 그것이 진실이라는것이 인정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간접증거자체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당연히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없다. 물론 이 요구는 모든 증거들에 대한 검토평가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간접증거는 그 수집이 비교적 쉬운데로부터 사건조사과정에는 비교적 많은 간접증거들을 볼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가운데는 진실인것과 허위적인것들이 서로 병존해있다. 그러므로 매개 간접증거들은 그 정확성을 철저히 검토확인한데 기초하여 리용해야 한다.

간접증거에 대한 검토확인은 먼저 그자체를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한다음 그것을 수집된 다른 간접증거들과 대비하여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사건담당자들은 매개 증거들의 형성원인과 내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간접증거체계에 의한 사건사실의 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건해결에 리용되는 모든 간접증거들이 반드시 사건사실과 객관적인 련관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사건사실과의 련관성은 간접증거가 증명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관건적인 작용을 하다.

간접증거의 사건사실과의 련관성에 대한 판단은 간접증거와 사건사실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과 간접증거의 증명가치에 대한 판단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간접증거와 사건사실과의 련관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최종적으로 증명하려는 사건사실(주요사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확정한데 기초하여 해당 증거가 그와 관계되는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사건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간접증거체계에 의한 사건사실의 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간접증거는 량적으로 일 정한 정도의 수량에 도달해야 한다는것이다.

사건과 관련된 매개 간접증거들은 모두 결합되여 하나의 완전한 증거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즉 증명하여야 할 모든 사건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그에 해당한 확실한 간접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건사실의 매 요소(범행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 범죄적결과, 범죄의 목적과 동기, 피소자의 개성 등)는 사슬과 같이 매 고리마다 련결되여있어 사건사실의 전일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사실요소들을 증명하는데 리용되는 증거들도 자연히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며 형상적으로 《증거사슬》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간접증거로 이루어진 증거체계로 사건사실을 증명하는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증거체계에는 직접증거가 결핍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사건의 주요사실이라는 사슬고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것이다. 주요사실도 사건사실의 한 부분에 속하므로 간접증거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건사실을 증명할 때에 우에서 말한 《증명사슬》이 형성될수 없게 된다. 또 형성되였다고 하여도 불완전한것 즉 《결손이 있는 증거사슬》로 되게된다. 그러므로 이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간접증거들로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그 수량이 일정한 정도로 보장되여야 한다.

간접증거체계에 의한 사건사실의 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간접증거들사이 그리고 간접증거와 사건사실들사이에 일치성이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증거들사이에는 모순이 없거나 발견되였던 모순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증거들사이의 호상관계는 그의 친밀성정도에 따라 검토되는 관계와 결합되는 관계, 모순되는 관계로 구분된다.

검토되는 관계는 증명하려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들사이에 고도의 일치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며 결합되는 관계는 증거들의 증명방향이 기본적으로 같을것을 요구한다.

증거들사이의 모순되는 관계는 매개 증거들이 담고있는 내용이나 정보사이에 충돌이 존재한다는것을 말한다. 간접증거로 이루어진 증거체계로 사건을 해결하는데서는 증거들 사이에 이러한 모순이나 충돌이 존재하는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순되는 증거는 일반적 으로 배제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사건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는 일부 엄중한 모순은 무조건 해결되여야 하지만 사건해결에 어떠한 영향도 줄수 없는 증거들사이의 모 순은 무시할수 있다는것이다.

간접증거체계에 의한 사건사실의 증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간접증거로 이루어진 증 명체계에 근거하여 론리적추리를 진행하여 얻은 결론은 오직 하나만이여야 한다는것이다.

간접증거체계에 근거하여 얻게 되는 결론은 사건담당자의 론리적추리에 기초하여 내려지게 된다.

간접증거를 리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론리적추리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이 경우 추리과정은 론리학적규칙에 부합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얻어낸 결론만이 정확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개별적인 간접증거는 사건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증명할수 있으나 그것들을 모두 결합하면 사건전반의 사실을 판단할수 있으며 하나의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다.

그런데 사건사실에 대한 가정은 여러가지로 설정될수 있는것만큼 이 결론은 설정될수 있는 모든 가정들을 완전히 배제한것이여야 한다. 만일 어느 한 가정이라도 배제되지 않는다면 이 결론은 사건사실을 인정하는 유일한 결론으로 되지 않는다. 설정될수 있는 가정들에 대한 배제는 맹목적인것으로 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과학적론리에 맞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간접증거체계에 의하여 사건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간접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호상련관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확인하며 론리학적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간접증거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키고 소송실천에 적극 활용함으로 써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간접증거, 증명과정